

食品衛生法의 變遷過程(2)

— 食品衛生法施行令 —

가. 食品衛生法施行令의 制定

- (1) 公 布 : 1962. 6.12(閣令 第811號)
(2) 構 成 : 24條 및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관련하여 販賣其他가 禁止되지 아니하는 217種의 化學的 合成品을 別表에 담고 있음.

(3) 内 容

- 제 1 조(화학적 합성품의 지정)
제 2 조(제품검사)
제 3 조(제품검사의 신청)
제 4 조(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 5 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 6 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 7 조(식품의 종류) : 식품위생관리 인을 두어야 할 식품
제 8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제 9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제10조(영업의 지정) : 업종별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할 영업
제11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2조(예외허가)
제13조(제조품목의 변경등의 허가)

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제16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제18조(회의)

제19조(보고)

제20조(수당과 여비)

제21조(간사 및 서기)

제22조(운영세칙)

제23조(식중독원인의 조사)

제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나. 1次改正

- (1) 公 布 : 1962.11.27(閣令第1057號)
(2) 主要內容
제2조와 관련하여 製品検査를 할 수 있는 添加物에 “두루친 및 두루친을 主要成分으로 하는 제제”를 추가

다. 2次改正

- (1) 公 布 : 1963.10. 8(閣令第1598號)
(2) 主要內容
(가) 제품검사 대상품목 및 시행부서를

시행부서	기 존	개 정
	대상품목	대상품목
보건사회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카린나트륨 · 두루전 · 탈색소 및 그의 제제 · 니트로후라존 및 그의 제제 · 니트로후릴아크릴산 및 그의 제제 · 과산화벤조일 · 카르복시메칠셀루로스나트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카린나트륨 · 두루전 ·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 · 탈색소 및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서울특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 두루전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 황산칼슘 · 視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 두루전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다음과 같이 조정함.

(나) 식품위생감시원의任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하도록 하는
但書를 新設

음식점영업, 유홍음식점영업, 다방영업, 다류제품제조업, 과자류제조업 등 36종으로 정하였음.

(다)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를 기존의 1회 100인 이상에서 1회 50인 이상으로 하였음.

마. 4次改正

(1) 公布 : 1967.10.13(대통령령 제3246호)

(2) 主要內容

(가) 化學的 合成品의 指定(제1조)을 削除함.
(나) 同業者 組合設立 관련조항을 신설
(다)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할 영업의 종류에 식초제조업을 추가함.

라. 3次改正

(1) 公布 : 1966.11.26(대통령령 제2808호)

(2) 主要內容

(가) 製品検査 대상품목을 정리하여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한정하였으며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하도록 하였음.

(나) 業種別 施設基準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업종별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할 영업의 종류를

바. 5次改正

(1) 公布 : 1968. 9.12(대통령령 제

3577호)

(2) 内 容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
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
도록 한 단서조항의 삭제

사. 6次改正

(1) 公 布 : 1970. 7.20(대통령령 제
5209호 : 전문개정)

(2) 内 容

제 1 조(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식품은 인삼차 및 영
양강화용식품으로 하고 첨가물은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성분
으로 하는 제제로 변경하였으며
대상품목의 허가기관인 보건사회
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
시장·도지사가 제품검사를 행하
도록 하였다.

제 2 조(제품검사의 신청)

제 3 조(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 4 조(임검회수의 기준)

제 5 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
명)

제 6 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

제 7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제 8 조(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제 9 조(영업의 종류) : 43종

제10조(시설기준에 대한 협의)

제11조(영업등의 허가신청)

제12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3조(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 등)

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
식소)

제16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제18조(회의)

제19조(보고)

제20조(수당과 여비)

제21조(간사 및 서기)

제22조(운영세칙)

제23조(식중독원인의 조사)

제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제25조(동업자조합설립에 있어서의
업종의 기준)

제26조(설립인가의 신청)

제27조(정관)

제28조(설립등기 등)

제29조(지구 등)

제30조(정관변경의 인가)

제31조(임원취임신고)

제32조(감독)

제33조(업무 및 회계감사)

아. 7次改正

(1) 公 布 : 1972.12.30(대통령령 제
6443호)

(2) 主要內容

(가)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와 관련하여 자격증 종전의
“대학에서”를 “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초급대학 또는 대학에
서”로 그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
고 농산제조학을 추가함.

(나) 제9조(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간이음식점 영업 및 식품소분업
의 정의변경

(다) 제13조(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
등)와 관련하여 과자류 제조업에
서 “빵·병과류의 제조설비와 접
객설비를 갖추고 동일장소 안에
서 제조하여 즉석판매하는 영업

은 제외한다”로 하였음.

- (라) 제14조와 관련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의 제외대상을 확대하였음(학교기숙사,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등)

자. 8次改正

- (1) 公 布 : 1973. 6.23(대통령령 제 6741호)

(2) 主要內容

- (가) 제품검사대상중 “인삼차 및 영양 강화용식품”을 “영양강화식품”으로 변경함.
(나)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구체화하여 명기함.
(다) 다과점영업, 영양강화식품제조업, 인스탄트식품제조업, 고추가루등 제조업, 건포류제조업, 식품소분업의 정의를 새로이 하였음.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차. 9次改正

- (1) 公 布 : 1974. 8.14(대통령령 제 7224호)

(2) 主要內容

- (가) 제7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중 제3호(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또는 초급대학의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를 제3호로 하여 제외 조항을 삭제함.
(나) 제9조(영업의 종류)에 보존음료 수 제조업을 신설

카. 10次改正

- (1) 公 布 : 1975. 4.28(대통령령 제 7612호)

(2) 主要內容

- (가) 제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에 쇼트닝유, 유산균음료수·소오스류·아이스크림을 추가함.
(나) 제9조(영업의 종류)중 다과점영업을 양과점영업으로, 빙과제조업을 아이스크림제조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당류제조업에 과당을 추가하였으며 인스탄트식품제조업의 정의를 변경하였음. 또한 “다방영업”을 신설하였음.
(다) 제11조(영업등의 허가관청)과 관련하여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종”을 추가·신설하였음.

타. 11次改正

- (1) 公 布 : 1975.12.31(대통령령 제 7935호)

(2) 主要內容

- (가) 제1조(제품검사)중 대상 첨가물에 방부제 및 제조품목허가후 2년이내에 생산되는 신개발제품을 추가함.
(나)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와 관련하여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임정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제9조(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영업의 종류를 정리하여 전문음

식점영업등 46종 및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조정하였음.
또한 제9조의 2항으로서 “영업자의 준수사항등”을 신설하였음.

파. 12次改正

(1) 公 布 : 1977. 3. 8(대통령령 제 8480호)

(2) 主要內容

- (가)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중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에 식품제조가공기사를 추가함.
(나) 제9조(영업의 종류)중 고추가루 등 제조업을 영양식품제조업으로 대체하고 어패류판매업을 조미료 제조업으로 변경함.

하. 13次改正

(1) 公 布 : 1979.11.24(대통령령 제 9669호)

(2) 主要內容

- (가) 제7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중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라야 한다”를 “대학에서 약학, 식품가공학 또는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라야 한다”로 변경함.
(나) 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에 2항을 신설하여 “2이상의 집단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두고 그로 하여금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음.

거. 14次改正

(1) 公 布 : 1981. 4. 2(대통령령 제

10268호)

(2) 改正理由

食品衛生法이 改正됨(1980.12.31 法律 第3334號)에 따라 그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製品検査對象에서 營養食品을 除外함. (令 第1條)
(나) 食品衛生管理人을 1種과 2種으로 区分하고, 1種은 從業員 20人以上의 食品製造加工業所에, 2種은 從業員 20人未滿의 食品製造加工業所에 두도록 함. (종전에는 食品加工業과 從業員 10人未滿의 一部 食品製造業所등에는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지 않을 수 있었음) (令 第6條 및 第7條)
(다) 營業의 種類를 類型別로 整理하고, 食品自動販賣機營業등의 業種을 新設함. (令 第9條第1項)
(라) 大衆飲食店營業·食用일음販賣營業·食品自動販賣機營業·乳類販賣營業·食品販賣營業등은 申告에 의하여 營業을 할 수 있게 함. (종전에는 許可制였음) (令 第11條의 3)

너. 15次改正

(1) 公布 : 1982.10.21(대통령령 제10934호)

(2) 改正理由

營業의 種類에 簡易酒店을 新設하고, 다른 業種과 混同될 우려가 있는 一部業種의 營業範圍를 正確히 하여 許可管理上의 混亂을 防止하며, 營養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集團給食所의 範圍에 中小企業의 集團給食所를 追加하여 이들의 負擔을 輕減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大衆飲食店營業에 包含되어 있던 簡易酒店을 別途의 業種으로 分離·新設하는 同時에 大衆飲食店營業을 大衆飲食店과 인삼찻집으로 나누고, 現行 카바레·나이트 클럽·요정·外國人專用遊興飲食店으로 나누어진 遊興飲食店營業을 一般·舞稻·外國人專用遊興飲食店으로 나누도록 함(令 第9條第1項第1號·1號의 2 및 3號)
- (나) 다른 業種과 混同의 우려가 있는 아이스크림製造業·통조림 또는 병조림製造業·清涼飲料 또는 果菜類 등 飲料製造業·인스탄트食品製造業·食品加工業·衛生處理業등의 營業範圍를 明確하게 함(令 第9條第1項第7號·15號·17號·21號·24號·30號 및 47號).
- (다) 現行 營業所마다 두게되어 있는 食品衛生管理人을,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同種의 營業者들은 2種食品衛生管理人을 個別的으로 두는 대신에 同一 市·郡·區안에서는 共同으로 1種 食品衛生管理人을 둘 수 있도록 하여 零細業者의 負擔을 輕減하도록 함(令 第6條第2項).
- (라) 調理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集團給食所의 範圍에 그 從事者의 紿食만을 目的으로 設置된 集團給食所를 追加하여 一般企業의 負擔을 輕減하도록 함(令 第14條)
- (마) 營養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集團給食所의 範圍에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의 集團給食所를 追加하여 이들의 負擔을 輕減하도록 함(令 第15條).

더. 16次改正

- (1) 公布 : 1984. 4.13(대통령령 제 11409호)

(2) 改正理由

申告營業인 大衆飲食店을 許可營業으로 轉換하여 올림픽등 大規模 國際行事에 대비하여 大衆飲食店의 衛生管理에 徹底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이 管掌하는 통조림 또는 병조림 製造業의 許可에 관한 業務를 道知事が 管掌하도록 하여 行政의 能率化를 도모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保健社會部長官이 管掌하는 통조림 또는 병조림製造業의 許可에 관한 業務를 道知事が 管掌하도록 함(令 第11條).
- (나) 大衆飲食店 營業을 申告制에서 許可制로 轉換함(令 第11條의 3).

더. 17次改正

- (1) 公布 : 1985. 6.29(대통령령 제 11717호)

(2) 改正理由

畜·水產物加工食品의 許可 및 管理業務가 農水產部로부터 保健社會部로 移管됨에 따라 關係規定을 整備하고, 食品關係營業의 종류를 보다合理的으로 痛·廢合함으로써 飲食店등의 業種違反行爲를 방지하고 民願人の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1種 食品衛生管理人을 두어야 할 業種에 水產物을 主原料로 하는 통·병조림製造業과, 畜產物을 主原料로 하는 乳加工品製造業·乳處理業 및 食肉製品製造業을

追加함(令 第6條第1號).

- (나) 自家品質管理業務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食品衛生管理人의 職務를 新設함으로써 自家品質管理를 強化하도록 함(令 第7條의 2 新設).
- (다) 49個業種으로 細分되어 있는 食品關係營業中 유사한 業種을 統合하여 36個業種으로 調整함(令 第9條第1項)
- ① 簡易酒店은 「遊興飲食店」에 統合하고 專門飲食店은 이를 廢止하되, 이미 專門飲食店의 許可를 받은 者는 大衆飲食店 또는 遊興飲食店營業에 適合한 施設을 갖추어 그 營業의 變更許可를 받도록 함.
- ② 茄類製造業은 「糖類製造業」에, 마야가린 또는 쇼트닝類型製造業은 「食用油脂製造業」에 각각 吸水·統合함.
- ③ 醫類製造業·食醋製造業·調味料製造業은 「調味食品製造業」으로, 加工乳製造業·乳製品製造業은 「乳加工品製造業」으로 각각 統合함.
- ④ 乳類販賣業·食肉販賣業 등 5個販賣業種은 「食品販賣業」으로, 乳類運搬業과 食肉運搬業은 「食品運搬業」으로, 물수건衛生處理業·젓가락등衛生處理業·食肉등 包裝紙衛生處理業은 「食品容器·包裝紙等 製造業」으로 각각 統合함.
- ⑤ 集乳業은 農水產部 許可事項이므로 이를 削除함.

12000호 : 전문개정)

(2) 改正理由

食品衛生法이 改正('86. 5.10. 法律第3823號)됨에 따라 그 施行에 必要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制度運營에 나타난 일부 未備한 사항을 補完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營業의 種類중 일부분의 業種에 대한 定義를 食品등의 開發에 맞추어 調整하고 도시락製造業을 새로이 新設함(令 第7條).

(나) 同業者組合은 業種別로 設立하되 특수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2이상의 業種이 하나의 組合을 共同으로 設立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地區에 같은 業種의 同業者組合을 2이상 設立할 수 없도록 함(令 第29條).

(다) 同業者組合聯合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分의 2이상의 組合의 同意를 얻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함(令 第30條).

(라) 同業者組合 또는 그 聯合會에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自律指導員은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 등이 있는 者중에서 組合長 또는 聯合會長이 任命하도록 하고, 自律指導員의 職務範圍를 정함(令 第32條 및 第33條).

(마) 韓國食品工業協會의 當然會員의 범위는 加入年度 전3년간의 年平均 賣出額이 10億이상인 食品製造·加工業 및 添加物製造業의 營業者로 함(令 第34條).

(바)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衛生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는 施設의 범위를 당해 建築物내에서 共同으

며. 18次改正

(1) 公布 : 1986.11.11(大統領令 제

- 로 사용하는 上下水道, 化粧室 등
으로 정함(令 第35條)
- (사) 課徵金의 賦課節次 및 算定基準
을 정함(令 第38條)
- (아) 食品振興基金의 管理·運用에 관
하여 必要한 사항을 정함(令 第44
條 내지 第51條).
- (4) 構 成: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제38조 관련하
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
표에 담고 있음.

부. 19次改正

- (1) 公 布: 1987. 7.13(대통령령 제
12213호)

(2) 改正理由

人參事業法의 適用을 받던 白蔘製品
이 人參事業法施行令의 改正으로 그
중 糖蔘을 제외하고는 그 適用對象
에서 제외되고, 食品衛生法의 適用
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食品衛生
法의 適用을 받게 되는 人參製品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종전의 人參事業法의 規定에 의
한 製品検査를 받던 糖蔘을 제외
한 白蔘製品이 食品衛生法의 適
用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人
參製品에 대하여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의한 製品検査를 받도록
함(令 第3條第1項)

- (나)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적합한 시
설을 갖추어 營業을 하여야 할
食品製造·加工業의 종류에 人參
을 원료로 한 製品을 製造·加工
하는 人參製品製造·加工業을 追
加함(令 第7條第1號처목).

- (다) 人參製品製造·加工業을 營爲하
고자 하는 者는 法 第22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
官의 營業許可 및 品目製造許可
를 받도록 함(令 第10條第1號).
- (라) 營養등 食品製造業의 범위에 幼
兒·病弱者 등을 위한 용도에 제
공할 목적으로 食用原料에 營養
成分을 가감하여 만든 一般營養
食品을 製造하는 營業외에 食用
原料에 들어있는 特定成分을 추
출 농축하여 만든 特殊食品을 製
造하는 營業을 추가함(令 第7條
第1號).

서. 20次改正

- (1) 公 布: 1989. 7.11(대통령령 제
12755호)

(2) 改正理由

食品衛生法의 改正(1988.12.31.法律
第4071號)에 따라 그 施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食生活方式의 變化趨
勢에 따라 現行規定의 일부 未備點
을 補完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김치를 傳統食品으로 育成發展시
키기 위하여 종전에 절임食品에
속하여 있던 것을 獨立業種으로
分類하는 등 食品關聯營業의 一
部 業種을合理的으로 調整함(令
第7條第1號).

- (나) 종전에는 自由業種이었던 百貨店
內의 食品販賣業 등에 대한 衛生
管理 및 販賣秩序維持의 필요성
이 增大됨에 따라 이들 營業을
獨立된 申告對象 營業으로 轉換
함(令 第7條第4號·第13條第1號).

- (다) 簡便食利用의 增加 등 食生活方

- 式의 變化에 따라 종전에는 大衆 飲食店營業에 속하여 있던 簡便 食調理販賣業을 一般調理販賣業 및 移動調理販賣業의 獨立業種으로 分類하고, 새로운 業種으로 出張調理販賣業을 新設함(令 第7條第8號).
- (라) 市場內 位置한 절임食品製造業, 壓搾食用油製造業등 零細製造業 所에 일정한 資格이나 經歷을 갖춘 食品衛生管理人을 두도록 하던 것을 소정의 教育을 履修한 者를 食品衛生管理人으로 둘 수 있도록 緩和함으로써 零細業所의 負擔을 줄이고 制度의 實效性을 확보하도록 함(令 第15條).
- (마) 法改正으로 營業停止 등의 行政 處分에 갈음한 課徵金의 最高限度額이 1千萬원에서 2千萬원으로 引上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課徵金의 額數를 上向調整하고, 課徵金의 賦課等級을 종전의 13等級에서 33等級으로 細分하여 課徵金賦課의 公平을 기함(令 第38條, 別表).
- (가) 사전 製品検査를 받아야 하는 製品에 健康補助食品을 포함시킴으로써 同製品의 信賴性·安全性을 확보하고 流通秩序의 穩립과 製品의 品質向上을 도모함(令 第3條第1項).
- (나) 기타食品製造·加工業중 營業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營業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함(令 第7條第1號터目).
- (다) 現行의 食品販賣業을 現實에 맞게 細分化하고, 腐敗·變質되기 쉬운 食肉副產物과 增加趨勢에 있는 注文者 商標附着 製品을 傳門的으로 취급하는 營業을 新設하여 食品流通管理를 專門化함(令 第7條第4號나目).
- (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할 수 있는 食品營業의 종류에 市·道知事が 지정하는 傳統食品 또는 土產食品을 製造·加工하는 營業 외에 農漁民 生產者團體가 직접 製造·加工하는 營業을 추가함으로써 農漁民이 食品製造加工產業에 보다 쉽게 參여할 수 있도록 與件을 造成함(令 第13條第3號).

어. 21차改正

- (1) 公布 : 1991. 3.11(대통령령 제 13325호)
- (2) 改正理由
食品中 사전 製品検査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食品衛生水準의 향상을 기하고, 그동안의 現實與件을 반영하여 食肉副產物專門販賣業과 流通專門販賣業을 新設하는등 일부 制度의 未備點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 (3) 主要骨子

저. 22次 改正

- (1) 公布 : 1991.8.24(대통령령 제 13453호)
- (2) 主要骨子 및 改正理由
현재 保健社會部長官이 許可·管理하고 있는 食品製造·加工業중 인스턴트면류제조업,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許可·management를 市·道知事が 하도록 하여 地方化時代에 副應하고 民願人の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